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3.1조 일반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제13.2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1.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9장(투자) 및 제10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2. 이 장은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3.3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그 조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3.4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적인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 전자적으로 전송된 일부 디지털제품¹에 대하여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가. 다음을 근거로 하는 경우

1)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것, 또는

2)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것, 또는

나. 자국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2. 제1항은 제9.12조(비합치 조치) 또는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¹ 양국 간 무역을 촉진하려는 양 당사국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제1항의 “일부 디지털제품”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또는 발주되는 그러한 디지털제품 또는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만을 지칭한다.

나. 제10.1조(적용범위)에 정의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제13.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나.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가. 정당한 정부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목적의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제13.6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과 관련되는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3.7조

개인 정보 보호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한다.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

제13.8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3.9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특히 다음을 다를 협력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대중에게 발급되는 전자 서명 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 서비스의 원활화

나. 개인 정보의 보호

다.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관한 제공자의 책임

라.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의 취급

마.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

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사.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겪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협력한다.

3. 전자상거래의 전 세계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그러한 포럼의 틀 내에서 필요한 경우 견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제13.10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위하여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2,3}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그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전자기적 또는 광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디지털제품의 이송을 말한다.

개인 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이란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인의 동의 없이 또는 수령인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송부되는 음성 또는 팩스 서신을 포함한 전자 서신을 말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³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이 상품인지 또는 서비스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